

(붙임3)
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(홈페이지 등 게재용)

항상 계양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고객님께서 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아래 여신이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될 예정인 바,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대상여신

(기준일자 : 2025.06.16.)

차 주			손** 귀하					
계좌번호	대출 일자	만기 일자	대출 잔액(원)	연체금액(원)			연체시작일	
				미납원리금	원금	395,121		
					이자			
					연체이자			2,077,504
					비용			
합계		2,472,625						
061-*86*** *****	2023-04-14	2028-04-14	17,460,959				2024-11-06	

※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.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5-06-18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원리금 미납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 부과등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방법	계양농협 홈페이지 참조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(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,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, 이자감면, 담보권 실행 유예 등)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06월 16일

계양농업협동조합장

